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2022. 0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7호로 2022년 6월 8일 김길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통합돌봄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과 인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통합돌봄 사례회의
(안 제8조~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2. 6. 8.~ 6.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공기관의 지정과 인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이며
- 정부에서는 2019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20년부터 25개 자치구에 돌봄SOS 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의 거점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